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신규조문대비표 [본문]

* 2022년 3월1일부터 개정사항 적용, 적용시점 별도 표기사항 및 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

* 쪽은 2021년 인쇄지침 쪽수 기준(인쇄시에는 2022년도 지침 쪽수에 맞추어 변경 예정)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I. 어린이집의 설치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6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3. 직장어린이집	13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설치비 : 용자 - 내역, 지원한도, 지원 요건 등	정부(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삭제	
3. 직장어린이집	14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삭제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5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가)② 중 (i)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u>,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크(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가)② 중 (i)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u>,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크(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10. 놀이터 설치기준	48	<p>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하고, 이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건물에 부속 설치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 검사 대상임 < 신 설 > < 신 설 > 	<p>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u>실외 놀이터</u>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하고, 이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건물에 부속 설치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 검사 대상임 ※ 2022.2.1.부터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감원 제외) 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 위에 설치된 놀이터가 아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귀속된 놀이터를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단, 어린이집과 다른 어린이집·유치원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양 기관 재원아동의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놀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시간대 놀이터 이용 아동 수 확인 후 인가 가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놀이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한해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해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한해 대체놀이터로 인가 ※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 아동만이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놀이터를 추가확보해야 함 ※ 초등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영유아에게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생에게 우선권이 있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이 어려우므로 인가 불가 	
11.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기준	58	<p>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p>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3층에 한해 허용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64	<p>나. 어린이집의 반평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p>나. 어린이집의 반평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반편성</th> <th>출생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반</td> <td>'20. 1. 1. 이후 출생</td> </tr> <tr> <td>만1세반</td> <td>'19. 1. 1. ~ '19. 12. 31.</td> </tr> <tr> <td>만2세반</td> <td>'18. 1. 1. ~ '18. 12. 31.</td> </tr> <tr> <td>만3세반</td> <td>'17. 1. 1. ~ '17. 12. 31.</td> </tr> <tr> <td>만4세반</td> <td>'16. 1. 1. ~ '16. 12. 31.</td> </tr> <tr> <td>만5세반</td> <td>'15. 1. 1. ~ '15. 12. 31.</td> </tr> </tbody> </table>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0.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19. 1. 1. ~ '19. 12. 31.	만2세반	'18. 1. 1. ~ '18. 12. 31.	만3세반	'17. 1. 1. ~ '17. 12. 31.	만4세반	'16. 1. 1. ~ '16. 12. 31.	만5세반	'15. 1. 1. ~ '15. 12. 31.	<table border="1"> <thead> <tr> <th>반편성</th> <th>출생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만0세반</td> <td>'21. 1. 1. 이후 출생</td> </tr> <tr> <td>만1세반</td> <td>'20. 1. 1. ~ '19. 12. 31.</td> </tr> <tr> <td>만2세반</td> <td>'19. 1. 1. ~ '18. 12. 31.</td> </tr> <tr> <td>만3세반</td> <td>'18. 1. 1. ~ '17. 12. 31.</td> </tr> <tr> <td>만4세반</td> <td>'17. 1. 1. ~ '16. 12. 31.</td> </tr> <tr> <td>만5세반</td> <td>'16. 1. 1. ~ '15. 12. 31.</td> </tr> </tbody> </table>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1.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20. 1. 1. ~ '19. 12. 31.	만2세반	'19. 1. 1. ~ '18. 12. 31.	만3세반	'18. 1. 1. ~ '17. 12. 31.	만4세반	'17. 1. 1. ~ '16. 12. 31.	만5세반	'16. 1. 1. ~ '15. 12. 31.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0.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19. 1. 1. ~ '19. 12. 31.																															
만2세반	'18. 1. 1. ~ '18. 12. 31.																															
만3세반	'17. 1. 1. ~ '17. 12. 31.																															
만4세반	'16. 1. 1. ~ '16. 12. 31.																															
만5세반	'15. 1. 1. ~ '15. 12. 31.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21.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20. 1. 1. ~ '19. 12. 31.																															
만2세반	'19. 1. 1. ~ '18. 12. 31.																															
만3세반	'18. 1. 1. ~ '17. 12. 31.																															
만4세반	'17. 1. 1. ~ '16. 12. 31.																															
만5세반	'16. 1. 1. ~ '15. 12. 31.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65	<p>○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p> <table border="1"> <thead> <tr> <th>반별 정원기준</th> <th>만0세</th> <th>만1세</th> <th>만2세</th> <th>만3세</th> <th>만4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원칙</td> <td>3명</td> <td>5명</td> <td>7명</td> <td>15명</td> <td>20명</td> </tr> </tbody> </table> <p>※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p>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p>○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p> <table border="1"> <thead> <tr> <th>반별 정원기준</th> <th>만0세</th> <th>만1세</th> <th>만2세</th> <th>만3세</th> <th>만4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원칙</td> <td>3명</td> <td>5명</td> <td>7명</td> <td>15명</td> <td>20명</td> </tr> </tbody> </table> <p>※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p>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68~69 (순서 변경)	<p>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p> <p>○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p> <p>○ (생략)</p> <p>○ (생략)</p> <p>○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p>	<p>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p> <p>○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p> <p>*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p> <p>○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정할 수 있음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 (생략) ○ (생략)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1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1	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1	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1	<p>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p>다. 입소 및 퇴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3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 위</th> <th>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 순 위</td> <td>임신부</td> <td>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td> <td>필수</td> </tr> </tbody> </table>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임신부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필수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 위</th> <th>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 순 위</td> <td>임신부</td> <td>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월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td> <td>필수</td> </tr> </tbody> </table>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임신부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월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필수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임신부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필수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임신부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월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필수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3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 위</th> <th>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맞 근</td> <td>•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td> <td>중 1부</td> </tr> </tbody> </table>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맞 근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중 1부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 위</th> <th>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맞 근</td> <td>•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td> <td>중 1부</td> </tr> </tbody> </table>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맞 근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중 1부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맞 근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중 1부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맞 근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중 1부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순 위	별 이 가 구	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필수				중 1부 필수	중 1부 필수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4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순 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 위	맞 별 이 가 구	취 업 준 비 자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 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중 1부 ② 필수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어린이집 운영일반 원칙	74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 colspan="3">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 순위</td> <td rowspan="2">맞 별 이 가 구</td> <td rowspan="2">자 영 업자</td> <td>일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td> <td>중 1부 필수</td> </tr> <tr> <td>신 규 자 영 업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영업자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td> <td>중 1부 필수</td> </tr> </tbody> </table>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위	맞 별 이 가 구	자 영 업자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 규 자 영 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영업자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p>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 colspan="3">구분</th> <th>확인서류</th> <th>제출구분</th> </tr> </thead> <tbody> <tr> <td>1 순위</td> <td>맞 별 이 가 구</td> <td>자 영 업자</td> <td>일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td> <td>중 1부 필수</td> </tr> </tbody> </table>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위	맞 별 이 가 구	자 영 업자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위	맞 별 이 가 구	자 영 업자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 규 자 영 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영업자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 순위	맞 별 이 가 구	자 영 업자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75	<p>3) 입소자 결정</p> <p>※ 2)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이하 생략)</p>	<p>3) 입소자 결정</p> <p>※ 2) 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이하 생략)</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77	4) 준수사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 (신설)	4) 준수사항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u>*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332p)</u>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85	아.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아. 장부 등의 비치 ○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u>* 전자출석부 등록 및 수정 기한이 경과된 출결정보는 수정 불가</u>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87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1)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II-3>을 발급해야 하나 <u>아이행복카드</u>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u>아이행복카드</u>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생략)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u>아이행복카드</u> 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u>아이행복카드</u>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u>아이행복카드</u> 는 기발급된 <u>아이사랑카드</u> 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1)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II-3>을 발급해야 하나 <u>국민행복카드</u>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u>국민행복카드</u>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현행과 같음)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u>국민행복카드</u> 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u>국민행복카드</u>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u>국민행복카드</u> 는 기발급된 <u>아이행복카드</u> , <u>아이사랑카드</u> 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기시행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9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보육료 단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보육료 단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9	<p>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p> <p>○ 결정권자 : 시·도지사</p> <p>- (생략)</p> <p>※ < 신설 ></p> <p>※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u>사회보장정보원에</u> 공문 통보</p>	<p>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p> <p>○ 결정권자 : 시·도지사</p> <p>- (현행과 같음)</p> <p>※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되며,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 변경 불가</p> <p>※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u> 공문 통보</p>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9	<p>1) 보육료 수납</p> <p>○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p> <p>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p> <p>-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p> <p>※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p> <p>※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p> <p>※ <u>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도 보육료 지원 가능</u></p>	<p>1) 보육료 수납</p> <p>○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p> <p>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p> <p>-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p> <p>※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p> <p>※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p> <p>※ <u>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도 보육료 지원 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u></p>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90	<p>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p> <p>○ (생략)</p> <p>○ (생략)</p> <p>-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p>	<p>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p> <p>○ (생략)</p> <p>○ (생략)</p> <p>-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u>관계없이</u>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90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8, 보육료 지원기준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8, 보육료 지원기준 등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91	<p>메시 안내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2세반)에 대해서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하는 보육료와 별도로 정부로부터 기관보육료가 직접 지원됩니다. * 기관보육료지원금: 0세 528,000원, 1세 287,000원, 2세 194,000원 	<p>메시 안내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2세반)에 대해서는 <u>국민행복카드</u>로 지원하는 보육료와 별도로 정부로부터 기관보육료가 직접 지원됩니다. * <u>기관보육료지원금: 0세 570,000원, 1세 310,000원, 2세 210,000원</u>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92	<p>메시 보육료 수납액(*21. 1~2월)</p> <p>(단위: 원)</p>	<p>메시 보육료 수납액(*22. 1~2월)</p> <p>(단위: 원)</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th> <th>부모부담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정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u>484,000</u></td> <td>0</td> </tr> <tr> <td>만1세</td> <td><u>426,000</u></td> <td>0</td> </tr> <tr> <td>만2세</td> <td><u>353,000</u></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만4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만5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 음</td> <td><u>502,000</u></td> <td>0</td> </tr> <tr> <td></td>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u>502,000</u></td> <td>0</td> </tr> <tr> <td rowspan="7">정부마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u>484,000</u></td> <td>0</td> </tr> <tr> <td>만1세</td> <td><u>426,000</u></td> <td>0</td> </tr> <tr> <td>만2세</td> <td><u>353,000</u></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40,000</td> <td rowspan="4">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td> </tr> <tr> <td>만4세</td> <td>240,000</td> </tr> <tr> <td>만5세</td> <td>24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 음</td> <td><u>502,000</u></td> <td>0</td> </tr> <tr> <td></td>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u>502,000</u></td> <td>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84,000</u>	0	만1세	<u>426,000</u>	0	만2세	<u>353,000</u>	0	만3세	240,000	0	만4세	240,000	0	만5세	24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0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02,000</u>	0	정부마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84,000</u>	0	만1세	<u>426,000</u>	0	만2세	<u>353,000</u>	0	만3세	240,000	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40,000	만5세	24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0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02,000</u>	0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th> <th>부모부담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정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u>499,000</u></td> <td>0</td> </tr> <tr> <td>만1세</td> <td><u>439,000</u></td> <td>0</td> </tr> <tr> <td>만2세</td> <td><u>364,000</u></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60,000</td> <td>0</td> </tr> <tr> <td>만4세</td> <td>260,000</td> <td>0</td> </tr> <tr> <td>만5세</td> <td>260,000</td> <td>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 음</td> <td><u>532,000</u></td> <td>0</td> </tr> <tr> <td></td>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u>532,000</u></td> <td>0</td> </tr> <tr> <td rowspan="7">정부마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u>499,000</u></td> <td>0</td> </tr> <tr> <td>만1세</td> <td><u>439,000</u></td> <td>0</td> </tr> <tr> <td>만2세</td> <td><u>364,000</u></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60,000</td> <td rowspan="4">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td> </tr> <tr> <td>만4세</td> <td>260,000</td> </tr> <tr> <td>만5세</td> <td>260,00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 음</td> <td><u>532,000</u></td> <td>0</td> </tr> <tr> <td></td>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u>532,000</u></td> <td>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99,000</u>	0	만1세	<u>439,000</u>	0	만2세	<u>364,000</u>	0	만3세	260,000	0	만4세	260,000	0	만5세	26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3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32,000</u>	0	정부마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99,000</u>	0	만1세	<u>439,000</u>	0	만2세	<u>364,000</u>	0	만3세	260,000	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60,000	만5세	26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3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32,000</u>	0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84,000</u>	0																																																																																																																										
		만1세	<u>426,000</u>	0																																																																																																																										
		만2세	<u>353,000</u>	0																																																																																																																										
		만3세	240,000	0																																																																																																																										
		만4세	240,000	0																																																																																																																										
		만5세	24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0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02,000</u>	0																																																																																																																										
정부마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84,000</u>	0																																																																																																																										
		만1세	<u>426,000</u>	0																																																																																																																										
		만2세	<u>353,000</u>	0																																																																																																																										
		만3세	240,000	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40,000																																																																																																																											
		만5세	24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0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02,000</u>	0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99,000</u>	0																																																																																																																										
		만1세	<u>439,000</u>	0																																																																																																																										
		만2세	<u>364,000</u>	0																																																																																																																										
		만3세	260,000	0																																																																																																																										
		만4세	260,000	0																																																																																																																										
		만5세	26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3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32,000</u>	0																																																																																																																									
	정부마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u>499,000</u>	0																																																																																																																									
			만1세	<u>439,000</u>	0																																																																																																																									
만2세			<u>364,000</u>	0																																																																																																																										
만3세			260,000	사도자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60,000																																																																																																																											
만5세			26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 음	<u>532,000</u>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u>532,000</u>	0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93	<p>보육료 수납액('21. 3월~)</p> <p>(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th> <th>부모부담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정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48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426,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353,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만4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만5세</td> <td>240,000</td> <td>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502,000</td> <td>0</td> </tr> <tr>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502,000</td> <td>0</td> </tr> <tr> <td rowspan="10">장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484,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426,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353,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40,000</td> <td>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td> </tr> <tr> <td>만4세</td> <td>240,000</td> <td></td> </tr> <tr> <td>만5세</td> <td>240,000</td> <td></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502,000</td> <td>0</td> </tr> <tr>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502,000</td> <td>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0	만4세	240,000	0	만5세	24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02,000	0	장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	만4세	240,000		만5세	24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02,000	0	<p>보육료 수납액('22. 3월~)</p> <p>(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지원구분</th> <th>연령</th> <th>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th> <th>부모부담보육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정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499,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439,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364,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80,000</td> <td>0</td> </tr> <tr> <td>만4세</td> <td>280,000</td> <td>0</td> </tr> <tr> <td>만5세</td> <td>280,000</td> <td>0</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532,000</td> <td>0</td> </tr> <tr>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532,000</td> <td>0</td> </tr> <tr> <td rowspan="10">장부지원 어린이집</td> <td rowspan="6">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td> <td>만0세</td> <td>499,000</td> <td>0</td> </tr> <tr> <td>만1세</td> <td>439,000</td> <td>0</td> </tr> <tr> <td>만2세</td> <td>364,000</td> <td>0</td> </tr> <tr> <td>만3세</td> <td>280,000</td> <td>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td> </tr> <tr> <td>만4세</td> <td>280,000</td> <td></td> </tr> <tr> <td>만5세</td> <td>280,000</td> <td></td> </tr> <tr> <td>장애아보육료</td> <td>구분없음</td> <td>532,000</td> <td>0</td> </tr> <tr> <td>누리3~5세장애아보육료</td> <td>만3~5세</td> <td>532,000</td> <td>0</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99,000	0	만1세	439,000	0	만2세	364,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32,000	0	장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99,000	0	만1세	439,000	0	만2세	364,000	0	만3세	280,000	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32,000	0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0																																																																																																																										
		만4세	240,000	0																																																																																																																										
		만5세	24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02,000	0																																																																																																																										
	장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84,000	0																																																																																																																									
			만1세	426,000	0																																																																																																																									
만2세			353,000	0																																																																																																																										
만3세			240,000	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																																																																																																																										
만4세			240,000																																																																																																																											
만5세			24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0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02,000	0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99,000	0																																																																																																																									
	만1세		439,000	0																																																																																																																										
	만2세		364,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32,000	0																																																																																																																										
	장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99,000	0																																																																																																																									
			만1세	439,000	0																																																																																																																									
만2세			364,000	0																																																																																																																										
만3세			280,000	사도사가 정한 수납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이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3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32,000	0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5	<p>다. 필요경비 세부내역</p> <p>-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u>아이행복카드</u>를 통해 수납해야 함</p>	<p>다. 필요경비 세부내역</p> <p>-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u>국민행복카드</u>를 통해 수납해야 함</p>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5	<p>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중 략)</p> <p>○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중 략)</p>	<p>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중 략)</p> <p>○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그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중 략)</p>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102	<p>다. 산재보험</p> <p>1)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p> <p>※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시설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p> <p>라. 고용보험</p> <p>1) 가입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고용보험법 제8조)</p> <p>(신설)</p>	<p>다. 산재보험</p> <p>1) 가입대상 모든 어린이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p> <p>※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시설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p> <p>라. 고용보험</p> <p>1) 가입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고용보험법 제8조)</p> <p>마. 어린이집 4대보험 가입대상</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국민연금</th> <th>건강보험</th> <th>산재보험</th> <th>고용보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가입 대상</td> <td>근로자</td> <td>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td> <td>모든 사 업장</td> <td colspan="2">근로기준법에 의한 모 든 근로자</td> </tr> <tr> <td>사용자</td> <td colspan="2">가입대상</td> <td colspan="2">가입 불가</td> </tr> <tr> <td colspan="2">사용자 법정부 담금 예산 지원</td> <td colspan="4">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임의가입대상자 미지원)</td> </tr> </tbody> </table>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모든 사 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 든 근로자		사용자	가입대상		가입 불가		사용자 법정부 담금 예산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임의가입대상자 미지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모든 사 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 든 근로자																							
	사용자	가입대상		가입 불가																							
사용자 법정부 담금 예산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임의가입대상자 미지원)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04 105	<p>나. 보수의 지급</p> <p>1) 봉급월액(월 지급액) ○ 인건비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p> <p>라. 기 타 (신 설)</p> <p>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103~105P) 중 「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어</p>	<p>나. 보수의 지급</p> <p>1) 봉급월액(월 지급액) ○ <u>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u></p> <p>라. 기 타 ○ 3월 신학기 교사 채용을 위해 실무수습을 하였을 경우 교사채용 여부와 관 계없이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보수 지급</p> <p>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102~104P) 중 「<u>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u>」 단어로 변경</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05	<p>다. 퇴직급여제도</p> <p>○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p> <p>-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p>	<p>다. 퇴직급여제도</p> <p>○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p> <p>-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u>5개월 이내</u>에 반환해야 함</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6	<p>○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p> <p>-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 II-4>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p> <p>※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해야 함</p>	<p>○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p> <p>-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 II-4>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u>유선, 문자, SNS 등</u>)하고 <u>투약요청</u>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p> <p>※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유효기간 등)을 준수해야 함</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7	<p>2) 보육아동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조치</p> <p>가) 건강진단</p> <p>○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다만, ~ (중략)</p> <p>※ (중략)</p> <p><신설></p>	<p>2) 보육아동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조치</p> <p>가) 건강진단</p> <p>○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다만, ~ (중략)</p> <p>※※※ (중략)</p> <p>※ <u>차수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같음하므로, 영유아건강검진 마지막 차수를 전년도에 받았다면 올해도 건강검진 한 것으로 같음</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8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 검진주기: 총 8차에 걸쳐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후15~35일 ② 생후 4~6개월 ③ 생후 9~12개월 ④ 생후 18~24개월 ⑤ 생후 30~36개월 ⑥ 생후 42~48개월 ⑦ 생후 54~60개월 ⑧ 생후 66~71개월 <p>* 구강검진의 경우 4차, 6차, 7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4차는 18개월~29개월, 6차는 42개월~53개월, 7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p> <p>※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 12. 24. 일부개정시행.)</p> <p>※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협조(검진비: 무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평균 20만원의 정밀 검사비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3항 및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 검진주기: 총 8차에 걸쳐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후14~35일 ② 생후 4~6개월 ③ 생후 9~12개월 ④ 생후 18~24개월 ⑤ 생후 30~36개월 ⑥ 생후 42~48개월 ⑦ 생후 54~60개월 ⑧ 생후 66~71개월 <p>* 구강검진의 경우 4차, 6차, 7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4차는 18개월~29개월, 6차는 42개월~53개월, 7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p> <p>※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2020. 12. 24. 일부개정시행.)</p> <p>※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협조(검진비: 무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평균 20만원의 정밀 검사비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8	<p>다) 검사항목</p> <p>○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에 준함</p>	<p>다) 검사항목</p> <p>○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3항)에 준함</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8	<p>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p> <p><중략></p> <p>○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p> <p>*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http://idolbm.go.kr)</p> <p><신설></p>	<p>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p> <p><중략></p> <p>○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p> <p>*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http://idolbm.go.kr)</p> <p>-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등원 중단 및 격리 대상이 아님.</p> <p>·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님.</p> <p>· 해당 질환자가 등원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0	<p>가. 건강관리</p> <p>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p> <p>가) 건강진단: 매년 1회 이상 실시</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p> <p>※ 매년 1회는 1. 1.~12. 31.를 의미함</p> <p><신설></p>	<p>가. 건강관리</p> <p>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p> <p>가) 건강진단: 매년 1회 이상 실시</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p> <p>※ 매년 1회는 1. 1.~12. 31.를 의미함</p> <p>※ <u>대표자 주거시설 등 어린이집 사적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u></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0	<p>나) 검진 기관 및 양식</p> <p>○ 신규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p> <p>○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p> <p>※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p> <p>※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u>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실시(모든 어린이집)</u></p> <p>-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p> <p>-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p>	<p>나) 검진 기관 및 양식</p> <p>○ 신규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p> <p>○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p> <p>※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p> <p>※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u>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매년 1회* 실시(모든 어린이집)</u></p> <p>* <u>식품위생법의 매년 1회는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u></p> <p>(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p> <p>-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p> <p>-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0	<p>다) 검사항목</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 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p> <p>•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p>	<p>다) 검사항목</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 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에 준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p> <p>•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1	<p>가. 건강관리</p> <p>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p> <p>다) 검사항목</p>	<p>가. 건강관리</p> <p>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p> <p>다) 검사항목</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검진: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하되,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같음 가능 •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판정 시 치료 권고 • 보육교직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 (3~8주)*동안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업무 배제)토록 함 * 결핵진료지침 4판에 근거(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p>결핵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검진: 매년 실시(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하되,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같음 가능 •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판정 시 치료 권고 • 보육교직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 (3~8주)*동안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업무 배제)토록 하고 대체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결핵진료지침 4판에 근거(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1	<p>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p> <p>○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 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19)</p> <p><신설></p>	<p>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p> <p>○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 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18)</p> <p>-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 제한 및 격리 대상이 아님.</p> <p>·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 대상이 아님</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 해당 질환자가 업무중사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	
8. 어린이집의 건강·급 식·위생관리	111	18)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 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대상질환이 아니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보육교직원의 경우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님. 또한, 잠 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 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 니므로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각별히 주의	<각주 삭제>	
8. 어린이집의 건강·급 식·위생관리	112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중략>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해야 함 20)(전담 원칙)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 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 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써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 워 실행해야 함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중략>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해야 함 20)(전담 원칙)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2개 시설 을 1인이 담당함으로써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 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 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또한, 공동영양사는 2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임 면보고)되어야 하며 나머지 시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 록되어야 함.	
8. 어린이집의 건강·급 식·위생관리	112. 113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 34조) -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u>학부모에</u> <u>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칠</u> <u>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u>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 34조) -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u>아래의 질</u> <u>차에 따라 학부모 동의를 거칠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u>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신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하며 • 조리된 식품의 온도 관리를 하되, 조리 후 가급적 단시간 내에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함 </div> <p><위치변경></p> <p>○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외부음식 제공시 안내 및 동의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 •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 때에는 외부음식 제공 가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하며 • 조리된 식품의 온도 관리를 하되, 조리 후 가급적 단시간 내에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함 </div> <p>○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및 서면(서식 II-6 부모동의 및 조사서 참고)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관 등에 공지 <p>○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p> <p>○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p> <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2013.6.4.)</p> <p>** 공개방식(SNS,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공개형태(사진 등), 공개 주기 등</p> <p>○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p> <p>-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p> <p>-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p> <p>○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p> <p>-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p> <p>-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p> <p>○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10)</p>	<p>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p> <p>○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p> <p>*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2013.6.4.)</p> <p>** 공개방식(SNS,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공개형태(사진 등), 공개 주기 등</p> <p>○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p> <p>-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p> <p>-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p> <p><위치변경></p> <p>○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10)</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각주>	112	<p>20) ※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 제5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p>20) ※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4	<p>2) 급식위생</p> <p><중략></p> <p>○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서식 II-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급식분야)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p> <p>-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p>	<p>2) 급식위생</p> <p><중략></p> <p>○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p> <p>-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p> <p>※ 위생점검 방법 : 부록 <서식 II-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급식분야)를 참고하되 집단급식소 등록 어린이집의 경우 식약처의 <위생관리점검표>에 따름</p>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5	<p>참고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p> <p><u>*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u></p> <p>● <u>보존식 대상 :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 (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u></p> <p>● <u>보관방법</u></p> <p>- <u>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 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u></p> <p>- <u>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u></p> <p>- <u>영하18℃도 이하에서 14시간 이상 보관</u></p> <p>- <u>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u></p> <p>- <u>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u></p>	<p>참고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p> <p><u>*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u></p> <p>● <u>보존식 대상 :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 (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u></p> <p>● <u>보관방법</u></p> <p>- <u>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각 150g이상 보관 권장)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u></p> <p>- <u>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u></p> <p>- <u>영하18℃도 이하에서 14시간 이상 보관</u></p> <p>- <u>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u></p> <p>- <u>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18	3) 동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신살>	3) 동·식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식물을 비치해서는 안되며,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식물(식재료 포함)의 반입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121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중략>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함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중략>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 제품(안전인증 검사기준 W1, W2 또는 O그룹, A그룹, I 그룹)을 사용해야 함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21	<중략> ○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중략> ○ 등·퇴원(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2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를 작동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를 작동해야 함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2	<p>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교통안전법 제52조에 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준차량은 2년 유예) 	<p>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준차량은 2년 유예)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2	<p>라. 안전교육</p> <p>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함 <p>※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등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 교육자료실)</p>	<p>라. 안전교육</p> <p>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함 <p>※ 참고자료: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작 자료 (출처:어린이집안전공제회 <u>온라인</u> 안전교육시스템홈페이지-자료실)</p>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4	<p>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으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p>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4	<p>라. 안전교육</p> <p>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생략)</p> <p>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p>라. 안전교육</p> <p>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생략)</p> <p>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이수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 기관 이외 기관에서 교육 이수하는 것 지양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매년 어린이집당 1인 이상은 참여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삭제)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 권장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기본, 심화 중 택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27, 128	<p>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하원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 2) 보호자 사전 협의 3) 보호자 인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원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하원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함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p>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하원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 2) 보호자 사전 협의 3) 보호자 인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원시 보호자로부터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하원시 담당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을 확인해야함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안내 - <u>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 발송 시 회신 확인</u>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31	<p>나. 아동학대 신고</p> <p>○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p> <p>※ 20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p> <p>:</p> <p>-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p>	<p>나. 아동학대 신고</p> <p>○ 아동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신고시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 연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p> <p>※ 20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p> <p>:</p> <p>-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p>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32	<p>나. 아동학대 신고</p> <p>○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함</p> <p>-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p> <p>※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또는 교육·홍보 자료) 를 적극 활용</p>	<p>나. 아동학대 신고</p> <p>○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함</p> <p>-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p> <p>※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p>※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 를 적극 활용</p>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32	<p>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p> <p>○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p>	<p>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p> <p>○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p> <p>※ 행정지원시스템에 행정처분 등 법 위반 사항(법조항, 행정처분 내용) 구체적으로 입력</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4	<p>2)세부 추진방향</p> <p>○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의심시설 점검 등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p> <p>-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기 지도점검 전에 필요시 지도점검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p>	<p>2)세부 추진방향</p> <p>○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u>의심 어린이집 점검</u>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p> <p>-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기 지도점검 전에 필요시 <u>어린이집 자체점검표(어린이집용)</u>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p> <p>※ <u>민원 및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등을 조사할 경우, 신고된 민원사항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 내 점검이 불가할 때는 서류를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음(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자료등의 영치))</u></p>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5	<p>2)세부 추진방향 (중략)</p> <p>○ 보건복지부,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분야(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음.</p> <p>※ <u>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보육료, 보조금) 및 청구비용 적정성 정보 제공</u></p>	<p>2)세부 추진방향 (중략)</p> <p>○ 보건복지부,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분야(보육료 부정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음.</p> <p>※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사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보육료, 보조금) 및 청구비용 적정성 정보 제공</u></p> <p>※ <u>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특정분야,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5,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중략)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등)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중략)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보고, 교직원 이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열람 포함 ⑩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여부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음 ※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설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음 ※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u>조사자 연대 날인하여 확인서 작성·장구</u>,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시정 또는 변경), 고발 등의 조치할 수 있음(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설폐쇄)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행정사항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3조 및 제27조의2 등에 따라 조치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행정사항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3조 및 제27조의2 등에 따라 조치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p> <p>※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에 따라 ' 21.06.30. 이후 어린이집 운영비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 제45조, 제46조, 제54조 적용 할 수 있음.</p>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8	③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③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u>해야</u> 함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41	<p>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p> <p>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p> <p>○ 신고주체: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p> <p>○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등</p> <p>※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p> <p>○ 주요신고처</p> <p>-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p> <p>• 온라인 신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rk)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p> <p>• 유선 신고: 1670-2082</p> <p>※중전유선번호(02-6323-0123)에서 '19.7.1.부터 변경</p> <p>- 국민권익위원회</p> <p>• 부패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p>	<p>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p> <p>1) 공익제보 신고 개요 및 포상금 지급 개요</p> <p>○ 신고주체: 모든 국민</p> <p>○ 신고방법: <u>인터넷(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유선, 우편, 방문 등</u></p> <p>※ 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p> <p>○ 주요신고처</p> <p>-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p> <p>• 온라인 신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p> <p>• 유선 신고: 1670-2082</p> <p>※ 중전유선번호(02-6323-0123)에서 '19.7.1.부터 변경</p> <p>- 국민권익위원회</p> <p>• 부패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39	<p>○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p> <p>○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21년도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p> <p>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가) 신고내용 및 사실관계 사전조사 나)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육사업 안내 부록 참조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 불가)</p>	<p>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및 절차</p> <p>○ 지급 대상: ‘공익’ 제보를 한 신고인으로 내부고발자(보육교직원 등), 일 반국민(민원, 원내 학부모 등)</p> <p>○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 - 처분청인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행정처분이 종료(보조금 전액 환수 등)된 건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수행 및 신청→보건복지부가 최종 검토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p> <p>○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u>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적극안내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u>(포상금 실적 은 <u>2022년도</u>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p> <p>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내용 및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육사업 안내 부록 참조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 불가)</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43	바. 명단공표 4) 공표현황 통보 ○ (통보)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바. 명단공표 4) 공표현황 통보 ○ (통보)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u>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u>	
1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14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 11인 이상 15인 이내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함. * <u>영유아 수(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 11인 이상 15인 이내</u>	
14.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50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u>11월 1일부터</u>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 <u>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예시 : '22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1년 10월~'22년 9월, 선정기간은 '22년11월~'22년10월)</u>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6.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55	<p>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p> <p>○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6조)</p> <p>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p> <p>②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p> <p>③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p> <p>④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p> <p>⑤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p> <p>■총 위원 수별 구성 예시■ (단위: 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원 총수</th> <th>보호자 및 공익 대표</th> <th>보육 전문가</th> <th>관계 공무원</th> <th>원장</th> <th>보육교사 대표</th> </tr> </thead> <tbody> <tr><td>10</td><td>5</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1</td><td>6</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2</td><td>7</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3</td><td>8</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4</td><td>8</td><td>2</td><td>2</td><td>1</td><td>1</td></tr> <tr><td>15</td><td>8</td><td>3</td><td>2</td><td>1</td><td>1</td></tr> </tbody> </table>	위원 총수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원장	보육교사 대표	10	5	2	1	1	1	11	6	2	1	1	1	12	7	2	1	1	1	13	8	2	1	1	1	14	8	2	2	1	1	15	8	3	2	1	1	<p>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p> <p>○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u>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u>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6조)</p> <p>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p> <p>②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p> <p>③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p> <p>④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p> <p>⑤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p> <p>■총 위원 수별 구성 예시■ (단위: 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위원 총수</th> <th>보호자 및 공익 대표</th> <th>보육 전문가</th> <th>관계 공무원</th> <th>원장</th> <th>보육교사 대표</th> </tr> </thead> <tbody> <tr><td>10</td><td>5</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3</td><td>8</td><td>2</td><td>1</td><td>1</td><td>1</td></tr> <tr><td>16</td><td>10</td><td>3</td><td>1</td><td>1</td><td>1</td></tr> <tr><td>19</td><td>12</td><td>3</td><td>2</td><td>1</td><td>1</td></tr> <tr><td>20</td><td>9</td><td>4</td><td>3</td><td>2</td><td>2</td></tr> </tbody> </table>	위원 총수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원장	보육교사 대표	10	5	2	1	1	1	13	8	2	1	1	1	16	10	3	1	1	1	19	12	3	2	1	1	20	9	4	3	2	2	
위원 총수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원장	보육교사 대표																																																																													
10	5	2	1	1	1																																																																													
11	6	2	1	1	1																																																																													
12	7	2	1	1	1																																																																													
13	8	2	1	1	1																																																																													
14	8	2	2	1	1																																																																													
15	8	3	2	1	1																																																																													
위원 총수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원장	보육교사 대표																																																																													
10	5	2	1	1	1																																																																													
13	8	2	1	1	1																																																																													
16	10	3	1	1	1																																																																													
19	12	3	2	1	1																																																																													
20	9	4	3	2	2																																																																													
III. 보육교직원 자격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66	<p>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p> <p>○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표)</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p> <p>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p>	<p>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p> <p>○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표)</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p> <p>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u>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u>에서 기관의 장 또는 <u>시간제보육</u>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4) <신설></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신설></p> <p>마. <신설></p> <p>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사. 가목부터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p>※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p>	<p>4)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p> <p>※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p> <p>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p> <p>*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p> <p>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p> <p>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p> <p>아. 가목부터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p> <p>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p> <p>※ (삭제)</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2.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67	<p>○ 보육업무 경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p> <p>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p> <p>4) <신설></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p>	<p>○ 보육업무 경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p> <p>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u>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u></p> <p>4)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u>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u></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u>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u></p>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72	<p>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p> <p>2) 보육실습 실시 기준</p> <p>가) 실습기관</p> <p>○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어린이집</p> <p>-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p> <p>-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u>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 보육실습 규정을 적용함</u></p>	<p>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p> <p>2) 보육실습 실시 기준</p> <p>가) 실습기관</p> <p>○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u>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u></p> <p>-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p> <p>-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u>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u></p>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78	<p>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p> <p>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p> <p>○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한국보육진흥원(26)</p> <p>주26)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u>총파로 345</u> 주연빌딩 5층)</p> <p>·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p>	<p>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p> <p>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p> <p>○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한국보육진흥원(26)</p> <p>26)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u>청파로 345</u> 주연빌딩 5층)</p> <p>·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IV.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85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text-align: center;">교직원 임면보 고</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록카드, <신살>,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text-align: center;">교직원 임면보 고</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록카드, 4대보험가입 증빙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div> </div>	
2. 보육교직원 임면	188	<p>2.보육교직원 임면(채용.해임 등)</p> <p>가)공통서류 (중략)</p> <p>○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신살></p>	<p>2.보육교직원 임면(채용.해임 등)</p> <p>가)공통서류 (중략)</p> <p>○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p> <p>*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자) 생략 가능</p>	22.1.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92	<p>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p> <p>가) 첨부서류 (중략)</p> <p>-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p> <p><신설></p>	<p>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p> <p>가) 첨부서류 (중략)</p> <p>-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p> <p>*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 일 전 2년 이내인 자) 생략 가능</p>	22.1.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94	<p>가. 일반원칙</p> <p>○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구: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p> <p>○ <신설></p>	<p>가. 일반원칙</p> <p>○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구: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p> <p>○ <u>어린이집 원장은 재직 중인 원장,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의 결격사항이 인지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u></p>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94	<p>가. 일반원칙</p> <p>○ (생략)</p> <p>- (생략)</p> <p>-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실시가 필요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 중 '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리</p>	<p>가. 일반원칙</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실시가 필요하며, 「<u>보육통합정보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업무편람</u>」 중 '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리</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94	<p>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 20조)</p> <p>1) 법 제 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p> <p>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p>	<p>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 20조)</p> <p>1) 법 제 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p> <p>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u>정신질환자</u></p>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200	<p>가. 일반원칙</p> <p>-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직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nput checked="" type="radio"/>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u>경력산출 방법</u></p> <p>•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p> $\text{주당근무시} \times \frac{\text{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40\text{시간}}$ </div>	<p>가. 일반원칙</p> <p>-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사 및 조리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u>보육교사 및 조리원</u>”)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nput checked="" type="radio"/> 주 40시간 미만 근무 <u>보육교사 및 조리원</u> 경력산출 방법</p> <p>•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u>보육교사 및 조리원</u> 경력 인정</p> $\text{주당근무시} \times \frac{\text{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40\text{시간}}$ </div>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200	<p>가. 일반원칙</p> <p>○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p> <p>○ <신살></p>	<p>가. 일반원칙</p> <p>○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p> <p>○ <u>보육교직원 경력산정 시 각 경력의 일단위 합산은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로 산정</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204	<p>나.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p> <p>2) 호봉인정 근무경력</p> <p>○ 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에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p> <p>●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p> <p><신설></p> <p>●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p> <p>●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p> <p>※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p> <p><신설></p> <p>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p> <p>○ 초임호봉확정 또는 호봉의 재확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확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p> <p>-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p> <p>-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p> <p>-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p> <p><신설></p>	<p>나.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p> <p>2) 호봉인정 근무경력</p> <p>○ 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에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p> <p>●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p> <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p> <p>● <u>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u></p> <p>●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p> <p>●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p> <p>※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p> <p>*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p> <p>** <u>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u></p> <p>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p> <p>○ 초임호봉확정 또는 호봉의 재확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확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p> <p>-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p> <p>-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p> <p>-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p> <p>- 한국보육진흥원 경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p>	22.1.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205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호봉관리 시스템 개발 이후)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 기 소급 적용 가능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206	2) 직종변경 가)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2) 직종변경 가)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211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추가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 년</td> <td>호봉 승급 기준일 변경 - 반기 1회 (1.1, 7.1) 승급에서 매월 1일자 승급으로 변경 (2021.7.1.부터 적용)</td> </tr> </table>	2021 년	호봉 승급 기준일 변경 - 반기 1회 (1.1, 7.1) 승급에서 매월 1일자 승급으로 변경 (2021.7.1.부터 적용)	
2021 년	호봉 승급 기준일 변경 - 반기 1회 (1.1, 7.1) 승급에서 매월 1일자 승급으로 변경 (2021.7.1.부터 적용)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14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준용 <신살>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최소 30%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위 수입금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여 등 사용 비율은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기준 준용 (* 미준수 시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 적용 제외) ※ 만1세반은 127,800원 이상, 만2세반은 105,9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15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신설>	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 할 수 있음. 다만, 적용 시기는 코로나19 종료시*까지로 함. * 종료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16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공동활용하는 어린이집은 소속 영양사가 2개 어린이집을 교대로 상주하며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삭제)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18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2) 다른시설의 겸임제한 가) 일반기준 ○ 특히,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가, 휴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함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신설>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2) 다른시설의 겸임제한 가) 일반기준 ○ 특히,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가, 휴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함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휴게시간 제외)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19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신설>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19	<p>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p> <p>-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함</p> <p><신설></p>	<p>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p> <p>-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함</p> <p>- <u>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함</u></p>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20-22	<p>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p> <p>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법조문</th> <th colspan="3">처분기준</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 <td>법 제46조 제1호</td> <td></td> <td></td> <td></td> </tr> <tr> <td>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td> </tr> <tr> <td>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4) 그 밖의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3개월</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td> <td>법 제46조 제2호</td> <td>자격정지 3개월</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td> <td>법</td> <td>자격정지</td> <td>자격정지</td> <td>자격정지</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p>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p> <p>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법조문</th> <th colspan="3">처분기준</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td> <td>법 제46조 제1항 제1호</td> <td></td> <td></td> <td></td> </tr> <tr> <td>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td> <td>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td> </tr> <tr> <td>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4) 그 밖의 경우</td> <td></td> <td>자격정지 3개월</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td> <td>법 제46조 제1항 제2호</td> <td>자격정지 3개월</td> <td>자격정지 6개월</td> <td>자격정지 1년</td> </tr> <tr> <td>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td> <td>법 제46조 제1항 제3호</td> <td>자격정지 1개월</td> <td>자격정지 3개월</td> <td>자격정지 6개월</td> </tr> <tr> <td>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td> <td>법 제46조</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6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 호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6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3호	1개월	3개월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5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6호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를 입힌 경우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라. 자격정지 절차도				라. 자격정지 절차도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후조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전국 시도지사 및 사군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 사항 공문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7조제1항 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후조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전국 시도지사 및 사군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 사항 공문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7조제1항 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 	
10.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21	※ 200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2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0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0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12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1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24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25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1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신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u>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u> - <u>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u> <u>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u>	기 시행중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1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신설> <중략>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u>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u> <중략>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u>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u>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을 온라인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삭제)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보수교육 내용 <공통사항>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 →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II-12)→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보수교육내용 <공통사항>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 →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II-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보수교육 내용 <공통사항>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보수교육내용 <공통사항>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p> <p>○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p> <p>○ 특별 직무 교육 내 건강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p> <p><신설></p>	<p>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p> <p>○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p> <p>○ 특별 직무 교육 내 건강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p> <p>○ 「건강안전」영역에 '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처리등 '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p>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4	<p>다. 보수교육 내용</p> <p>○ 공통 사항</p> <p>●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p>	<p>다. 보수교육 내용</p> <p>○ 공통 사항</p> <p>●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p>	22.1.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42	<p>3)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영역</th> <th colspan="2">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th> </tr> <tr> <th>교과목</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건강·안전 (9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td> <td>3</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td> <td>3</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td> <td>3</td> </tr> </tbody> </table>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건강·안전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3	<p>3)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영역</th> <th colspan="2">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th> </tr> <tr> <th>교과목</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건강·안전 (9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td> <td>3</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td> <td>3</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td> <td>3</td> </tr> </tbody> </table>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건강·안전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3	22.1.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건강·안전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3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건강·안전 (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u>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u> 	3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48	<p>마.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운영</p> <p>○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수요조사(시·군·구)→교육대상자 선정(시·군·구)→교육대상자 승인(시·도)→교육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p> <p>※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p>	<p>마.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운영</p> <p>○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수요조사(시·군·구)→교육대상자 선정(시·군·구)→교육대상자 승인(시·도)→교육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p> <p>※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p>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50	<p>라.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등 후단 <신설></p>	<p>라.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등</p> <p>○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실시 전문기관에서 수료인정 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p> <p>※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53	<p>나. 교육기관 및 과정</p> <p>○ 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선정 이후 별도 공지</p> <p>○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어·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p> <p><신설></p>	<p>나. 교육기관 및 과정</p> <p>○ 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 선정 이후 별도 공지</p> <p>○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어·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p> <p>다. 교육기관 선정</p> <p>○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p>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61	<p>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p> <p>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p> <p>바) 교육훈련 과목</p> <p>○ 보육실습: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p> <p>- 실습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p> <p>- 실습기관: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p> <p>※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p>	<p>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p> <p>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p> <p>바) 교육훈련 과목</p> <p>○ 보육실습: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p> <p>- 실습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p> <p>-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p> <p>※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실습 실시</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6. 보육교사 교육 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64	<p>마. 교육훈련시설 운영의 내실화</p> <p>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 조치 요구 ○ 교육훈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시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해야 함 <신설> 	<p>마. 교육훈련시설 운영의 내실화</p> <p>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 조치 요구 ○ 교육훈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시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해야 함 - <u>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u> 	
VI. 어린이집 평가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272	<p>가. 기본사항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확인 —(중략)—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5항목),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함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p>가. 기본사항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확인 —(중략)—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 위반이력사항(8항목)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함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73	<p>■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p> <p>[표]</p> <p>※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p>	<p>■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p> <p>[표]</p> <p>※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VII. 3~5세 누리과정				
1. 3-5세 누리과정 개요	296	※ 아동 1인당 26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	※ 아동 1인당 28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	
1. 3-5세 누리과정 개요	297	※ 적용시기: 2021년 1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22년 1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시부터 적용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97	<p>가. 지급절차 총괄</p> <p>■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p>※ '21.1월' 21.2월 임용 시, 원격이수 이수 후 원격수료정보를 당월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한 경우 지급</p> <p>※ '21.3월~:21.6월 임용 시, 원격연수 이수 후 원격수료정보를 당월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하고, 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이 있는 경우 지급</p> <p>※ 21.7월-임용 시 원격연수 + 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지급</p>	<p>가. 지급절차 총괄</p> <p>■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p>(삭제) ※ '21.1월' 21.2월 임용 시, 원격이수 이수 후 원격수료정보를 당월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한 경우 지급</p> <p>※ '21.3월~:21.6월 임용 시, 원격연수 이수 후 원격수료정보를 당월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하고, 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이 있는 경우 지급</p> <p>※ '21.7월-임용 시 원격연수 + 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지급</p>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97	<p>박스 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일: 2021년 보육사업안내(IV. 보육교직원 관리,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⑭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p>박스 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일: 2022년 보육사업안내(IV. 보육교직원 관리,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⑭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11천원(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u>1,025천원</u>(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3.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1,011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u>1,025천원</u>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VIII.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사업개요	308	<p>다. 지원대상</p> <p>○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p>	<p>다. 지원대상</p> <p>○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p>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9	<p>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p>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p>	<p>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p>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항목</th> <th>어린이집</th> <th>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상재해 대비시설</td> <t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3)의 아)' 요건 충족 필수</td> <t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td> </tr> <tr> <td>평가 등</td> <td>○ (공통)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td> <td>○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td> </tr> </tbody> </table>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3)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평가 등	○ (공통)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항목</th> <th>어린이집</th> <th>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th> </tr> </thead> <tbody> <tr> <td>비상재해 대비시설</td> <t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td> <t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td> </tr> <tr> <td>평가 등</td> <td>○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td> <td>○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td> </tr> </tbody> </table>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평가 등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3)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평가 등	○ (공통)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기준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의 4)의 아)' 요건 충족 필수																				
평가 등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 (공통)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5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u>충족률(현원/정원*100)</u>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 시간제, 방과후 아동은 정원, 현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충족률 5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u>충족률(현원/정원×100)</u>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 시간제보육, 방과후 아동은 정원, 현원에서 제외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13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 및 운영비</td> <td>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 및 운영비</td> <td>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생략 ○ 생략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생략)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생략)</td> </tr> <tr> <td></td> <td>(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td> </tr> <tr> <td></td> <td>(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 (생략)</td> </tr> <tr> <td></td> <td>(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td> </tr> <tr> <td></td> <td>(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70%) 또는 32만원(100%) 지원(1개반 기준)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70%) 또는 32만원(100%) 지원(1개반 기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70%) 또는 32만원(100%) 지원(1개반 기준)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14	<p>라. 지원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건비 및 운영비</td> <td>(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생략 </td> </tr> <tr> <td>(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p>라. 지원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건비 및 운영비</td> <td>(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생략 </td> </tr> <tr> <td>(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생략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생략 																			
	(인건비 지원내용) 생략 (운영비 지원내용)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td> </tr>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세부 지원 내용</th>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u>운영비를 초과</u>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td> </tr> </table>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u>운영비를 초과</u>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u>운영비를 초과</u>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15	<p>마. 회계 관리 기준</p> <p>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기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r> <td rowspan="2">운영비</td> <td>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td> </tr> <tr> <td>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td> </tr>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p>마. 회계 관리 기준</p> <p>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 기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r> <td rowspan="2">운영비</td> <td>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td> </tr> <tr> <td>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u>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td> </tr>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u>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p>(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p>(집행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 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u>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시간제 보육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td> </tr> </tbody> </table> <p>※ 세부 집행 기준은 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시간제보육 재무회계 매뉴얼 참고</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시간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시간제 보육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공문)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td> </tr> </tbody> </table> <p>※ 세부 집행 기준은 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시간제보육 재무회계 매뉴얼 참고</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시간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공문)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시간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시간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공문)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p>*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p>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16	<p>마. 회계 관리 기준</p> <p>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p> <p>◦ 집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운영비</td> <td>(근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td> </tr> <tr> <td></td> <td>(집행 기준)</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p>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p>	<p>마. 회계 관리 기준</p> <p>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p> <p>◦ 집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집행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운영비</td> <td>(근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td> </tr> <tr> <td></td> <td>(집행 기준)</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u>운영비</u></p> </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u>운영비</u></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p>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p>※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u>사용내역을 명시하여</u>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u>운영비</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 colspan="2">세부 집행 기준</th> </tr> <tr> <td></td> <td colspan="2"></td> </tr>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 colspan="2">세부 집행 기준</th> </tr> <tr> <td></td> <td colspan="2">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td> </tr> </table>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바. 운영기준	316	<p>1) 이용 및 지원시간</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 colspan="2">내 용</th> </tr> <tr> <td>이용대상</td> <td colspan="2">6개월~36개월 미만 영아</td> </tr> <tr> <td>지원대상</td> <td colspan="2">양육수당 수급가구</td> </tr> <tr> <td>지원시간</td> <td colspan="2">월 80시간</td> </tr> <tr> <td rowspan="3">보육료</td> <td>이용단가</td> <td>시간당 4천원</td> </tr> <tr> <td>지원단가</td> <td>시간당 3천원</td> </tr> <tr> <td>부모부담</td> <td>시간당 1천원</td> </tr> </table>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p>1) 이용 및 지원시간</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 colspan="2">내 용</th> </tr> <tr> <td>이용대상</td> <td colspan="2">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td> </tr> <tr> <td>지원대상</td> <td colspan="2">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td> </tr> <tr> <td>지원시간</td> <td colspan="2">월 80시간</td> </tr> <tr> <td rowspan="3">보육료</td> <td>이용단가</td> <td>시간당 4천원</td> </tr> <tr> <td>지원단가</td> <td>시간당 3천원</td> </tr> <tr> <td>부모부담</td> <td>시간당 1천원</td> </tr> </table> <p>* (외국인 이동) 아동등록은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22.4월 예정)</p>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16	<p>바. 운영 기준</p> <p>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p> <p>※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이용권 지급</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사전예약</th> <th>당일예약</th> </tr> <tr> <td>신청방법</td> <td>(생략)</td> <td></td> </tr> <tr> <td>신청기간</td> <td>(생략)</td> <td></td> </tr> <tr> <td>제출서류</td> <td>(생략)</td> <td></td> </tr> <tr> <td>준비물</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td> </tr> </table> <p>* (생략)</p> <p>*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p>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생략)		신청기간	(생략)		제출서류	(생략)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p>바. 운영 기준</p> <p>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p> <p>※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이용권 지급</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사전예약</th> <th>당일예약</th> </tr> <tr> <td>신청방법</td> <td>(생략)</td> <td></td> </tr> <tr> <td>신청기간</td> <td>(생략)</td> <td></td> </tr> <tr> <td>제출서류</td> <td>(생략)</td> <td></td> </tr> <tr> <td>준비물</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td> </tr> </table> <p>* (생략)</p> <p>*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p>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생략)		신청기간	(생략)		제출서류	(생략)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생략)																																									
신청기간	(생략)																																									
제출서류	(생략)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생략)																																									
신청기간	(생략)																																									
제출서류	(생략)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충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시간당4,000원) 5) <신설>	4,000원) 5) 퇴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아동 퇴소와 관련된 사항은 「2022년도 보육사업안 내 II.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을 준용함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18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한국보육진흥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td> </tr> </table>	한국보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한국보육진흥원</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 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td> </tr> </table>	한국보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 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한국보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한국보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 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19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운영총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td> </tr> </table>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총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한국보육진흥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운영총괄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td> </tr> </table>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총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총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총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실적관리 ◦지자체 업무지원 ◦관리기관 업무지원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민원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0	가. 제공기관 지정 ◦ 지정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40%;">희망기관 신청</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r> <tr> <td></td> <td></td> <td>(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생략	⇨	희망기관 신청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 제공기관 지정 ◦ 지정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40%;">희망기관 신청</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5%;">생략</td> <td style="width: 5%;">⇨</td> </tr> <tr> <td></td> <td></td> <td>(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생략	⇨	희망기관 신청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생략	⇨	희망기관 신청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생략	⇨	희망기관 신청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0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 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생략) - (생략)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신 설> -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 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생략) - (생략)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u> -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생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리모델링 등으로 당초 지정받은 제공기관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공간*에서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간제보육반 운영 인정(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동일 적용) * 지자체는 대체 공간의 설치기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운영 승인(지자체→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공문 발송)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2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지정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u>취소물량</u>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2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생 략) ◦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p>※ 세부내용은 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p>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 략) ◦ (생 략) ◦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p>※ 세부내용은 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p>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2~ 323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p>	<p>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p> <p>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p> <p><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진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td> <td>(생략)</td> </tr> <tr> <td>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td> <td>(생략)</td> </tr> <tr> <td>자율점검 (제공기관)</td> <td>5~6월, 9~10월</td> </tr> <tr> <td>기본사항점검 (공무원, 관리기관)</td> <td>6~7월, 10~11월</td> </tr> <tr> <td>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 「2021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별도 배포 예정) 참조</p>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생략)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생략)	자율점검 (제공기관)	5~6월, 9~10월	기본사항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6~7월, 10~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진행시기</th> </tr> </thead> <tbody> <tr> <td>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td> <td>(생략)</td> </tr> <tr> <td>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td> <td>(생략)</td> </tr> <tr> <td>자체점검 (제공기관)</td> <td>5~6월</td> </tr> <tr> <td>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td> <td>8~11월</td> </tr> <tr> <td>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 「2022년도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별도 배포 예정) 참조</p>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생략)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생략)	자체점검 (제공기관)	5~6월	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8~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생략)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생략)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생략)																											
자율점검 (제공기관)	5~6월, 9~10월																											
기본사항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6~7월, 10~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생략)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생략)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생략)																											
자체점검 (제공기관)	5~6월																											
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8~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생략)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23-3 27	<p>Ⅷ. 시간제 보육</p> <p>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p> <p>가. 제공기관 지정</p>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p>다. 사업기관 질 관리</p> <p>서식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p> <p>서식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p> <p>서식 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포기 서식(서식 추가)</p>	<p>Ⅷ. 시간제 보육</p> <p>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p> <p>가. 제공기관 지정</p> <p>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p> <p>다. 사업기관 질 관리</p> <p>서식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p> <p>서식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p> <p>서식 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신청서</p> <p>서식 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포기 서식(서식 추가)</p>																									
서식추가	324	-	서식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 신청서 * 서식 별첨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20%;">접수번호</td> <td style="width:20%;">접수일</td> <td style="width:60%;">처리기간 7일</td> </tr>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td> <td>법인·단체명</td> </tr> <tr> <td colspan="2">주소 (전화번호)</td> </tr> <tr> <td rowspan="2">제공기관 개요</td> <td>명칭</td> <td>기관유형</td> </tr> <tr> <td colspan="2">소재지</td> </tr> <tr> <td rowspan="10">변경 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 전</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 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제 공 기 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관유형</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 육 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치(층)</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td> </tr> <tr> <td colspan="4"> <p>변경사유</p> <p>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td> </tr> <tr> <td style="width:15%;">신청인 제출서류</td> <td style="width:55%;">변경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인가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td> <td style="width:10%;">수수료 없음</td> <td style="width:20%;"></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td> </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기관 개요	명칭	기관유형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공 기 관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보 육 실	위치(층)		면적(㎡)		기타	기타		<p>변경사유</p> <p>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인가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기관 개요	명칭	기관유형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공 기 관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보 육 실	위치(층)																																																		
		면적(㎡)																																																		
	기타	기타																																																		
	<p>변경사유</p> <p>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인가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IX.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3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설)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td> </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설)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30	<table border="1"> <tbody> <tr> <td>신청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td> </tr> <tr> <td>신청서</td> <td>-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td> </tr> </tbody> </table>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	<table border="1"> <tbody> <tr> <td>신청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td> </tr> <tr> <td>신청서</td> <td>-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td> </tr> </tbody> </table>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생략) • 신청장소 - 읍·면·동 ※ (생략) ※ <u>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u>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시)											
		<table border="1"> <tbody> <tr> <td>처리기한</td> <td>•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td> </tr> </tbody> </table>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table border="1"> <tbody> <tr> <td>처리기한</td> <td>•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td> </tr> </tbody> </table>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30	급여	<p>종류 및 지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신설) *(신설) • 영유아(만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6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502천원 •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50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51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급여	<p>종류 및 지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하는 가정양육수당 (24~85개월) : 100~200천원 수령 • 영유아(만0~2세)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532천원 •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 53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66천원 •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31	<p>【2021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0세반</th> <th>1세반</th> <th>2세반</th> <th>3~5세반</th> <th>3~5세반</th> <th>장애아</th> </tr> </thead> <tbody> <tr> <td>적용시기</td> <td>('21.1.1~)</td> <td>('21.1.1~)</td> <td>('21.1.1~)</td> <td>('21.1.1~2.28.)</td> <td>('21.3.1~)</td> <td>('21.1.1~)</td> </tr> <tr> <td>계</td> <td>1,012,000</td> <td>713,000</td> <td>547,000</td> <td>240,000</td> <td>260,000</td> <td>1,089,000</td> </tr> <tr> <td>정부지원보육료</td> <td>484,000</td> <td>426,000</td> <td>353,000</td> <td>240,000</td> <td>260,000</td> <td>502,000</td> </tr> <tr> <td>기관보육료</td> <td>528,000</td> <td>287,000</td> <td>194,000</td> <td>=</td> <td>=</td> <td>587,000</td> </tr> </tbody> </table>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1.1.1~)	('21.1.1~)	('21.1.1~)	('21.1.1~2.28.)	('21.3.1~)	('21.1.1~)	계	1,012,000	713,000	547,000	240,000	260,000	1,089,000	정부지원보육료	484,000	426,000	353,000	240,000	260,000	502,000	기관보육료	528,000	287,000	194,000	=	=	587,000	<p>【2022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0세반</th> <th>1세반</th> <th>2세반</th> <th>3~5세반</th> <th>3~5세반</th> <th>장애아</th> </tr> </thead> <tbody> <tr> <td>적용시기</td> <td>('22.1.1~)</td> <td>('22.1.1~)</td> <td>('22.1.1~)</td> <td>('22.1.1~2.28.)</td> <td>('22.3.1~)</td> <td>('22.1.1~)</td> </tr> <tr> <td>계</td> <td>1,069,000</td> <td>749,000</td> <td>574,000</td> <td>260,000</td> <td>280,000</td> <td>1,154,000</td> </tr> <tr> <td>정부지원보육료</td> <td>499,000</td> <td>439,000</td> <td>364,000</td> <td>260,000</td> <td>280,000</td> <td>532,000</td> </tr> <tr> <td>기관보육료</td> <td>570,000</td> <td>310,000</td> <td>210,000</td> <td>=</td> <td>=</td> <td>622,000</td> </tr> </tbody> </table>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2.1.1~)	('22.1.1~)	('22.1.1~)	('22.1.1~2.28.)	('22.3.1~)	('22.1.1~)	계	1,069,000	749,000	574,000	260,000	280,000	1,154,000	정부지원보육료	499,000	439,000	364,000	260,000	280,000	532,000	기관보육료	570,000	310,000	210,000	=	=	622,00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1.1.1~)	('21.1.1~)	('21.1.1~)	('21.1.1~2.28.)	('21.3.1~)	('21.1.1~)																																																																				
계	1,012,000	713,000	547,000	240,000	260,000	1,089,000																																																																				
정부지원보육료	484,000	426,000	353,000	240,000	260,000	502,000																																																																				
기관보육료	528,000	287,000	194,000	=	=	587,000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2.1.1~)	('22.1.1~)	('22.1.1~)	('22.1.1~2.28.)	('22.3.1~)	('22.1.1~)																																																																				
계	1,069,000	749,000	574,000	260,000	280,000	1,154,000																																																																				
정부지원보육료	499,000	439,000	364,000	260,000	280,000	532,000																																																																				
기관보육료	570,000	310,000	210,000	=	=	622,000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2	<p>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재외국민 출국지는 제외)</p> <p>※ (신설)</p>	<p>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p> <p>○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p> <p>※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p> <p>※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재외국민 출국지는 제외)</p> <p>※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2	<p>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 (생략) • (생략) ※ (생략)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신설) (생략) 	<p>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0. 1. 1. 이후 출생아동 • (생략) • (생략) ※ (생략)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생략)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3	<p>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양육수당)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p>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p> <p>(양육수당)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3	<p>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p> <p>2)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u>아동(최대 86개월 미만)</u>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p>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p> <p>2) 양육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u>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5개월)</u>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5	<p>참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농어촌지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생략) -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전 지역 - 준농어촌지역: (생략) •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생략) • 농어업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참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래1),2),3)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어촌지역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생략) -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전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동 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 (생략) 2)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생략) 3) 농어업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6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참고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수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수혜자와의 연락두절이거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u>일시중지</u> 처리함 ※(생략) 	<p>참고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수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생략) ※(생략) - (생략) - (생략) ※(생략) - 수혜자와의 연락두절이거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u>일시중지</u> 처리함 ※(생략)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8	<p>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신설) 	<p>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u>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u>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9	<p>라. 신청 구비서류</p> <p>※ 보육사업안내[부록]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p>	<p>라. 신청 구비서류</p> <p>※ 보육사업안내[부록]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p>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39	<p>라. 신청 구비서류</p> <p>(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p> <p>※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로 보육료 지원 카드 발급</p>	<p>라. 신청 구비서류</p> <p>(공통)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p> <p>※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로 보육료 지원 카드 발급</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41	2) 양육수당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2) 양육수당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42	바. 신청 시 안내사항 1) 처리기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바. 신청 시 안내사항 1) 처리기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43	바. 신청 시 안내사항 3) 신고의 의무 ○ (생략)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영이는 지원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바. 신청 시 안내사항 3) 신고의 의무 ○ (생략)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육수당의 경우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이는 지원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 기준	345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직권채정시는 책정일이 급여기준일임) *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가능(출생아 소급지원 규정 참고)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직권채정시는 책정일이 급여기준일임) *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가능(출생아 소급지원 규정 참고)하며, 주민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을 위한 조건(기 주민등록 신규발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타 <u>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등의 개별적인 사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u>	<p><u>등록 이전에 '가신청'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발급 후 보완한 정식 신청일을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가신청일이 생후 60일 이내면 소급 지원</u></p> <p>-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을 위한 <u>조건 및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u></p>	
2. 보육료 지원 개요	346	<p>나. 지원 방식</p> <p>○ 정부지원보육료는 <u>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u></p> <p>※ <신 살></p> <p>○ (생 략)</p>	<p>나. 지원 방식</p> <p>○ 정부지원보육료는 <u>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u></p> <p>※ <u>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u></p> <p>○ (생 략)</p>	
2. 보육료 지원 개요	346	<p>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260천원 × 12/26(일) = 120,000원(원단위 절사) • 12일: 실제 보육일수 / 26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p>예시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280천원 × 12/26(일) = 129,000원(원단위 절사) • 12일: 실제 보육일수 / 26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2. 보육료 지원 개요	349	<p>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p> <p>1. 중복지원 불가 대상</p> <p>○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신설),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p> <p>○ (생략)</p> <p>* (생략)</p> <p>○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사군구)</p> <p>- (생략)</p>	<p>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p> <p>1. 중복지원 불가 대상</p> <p>○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영이수당(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 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p> <p>○ (생략)</p> <p>* (생략)</p> <p>○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사군구)</p> <p>- (생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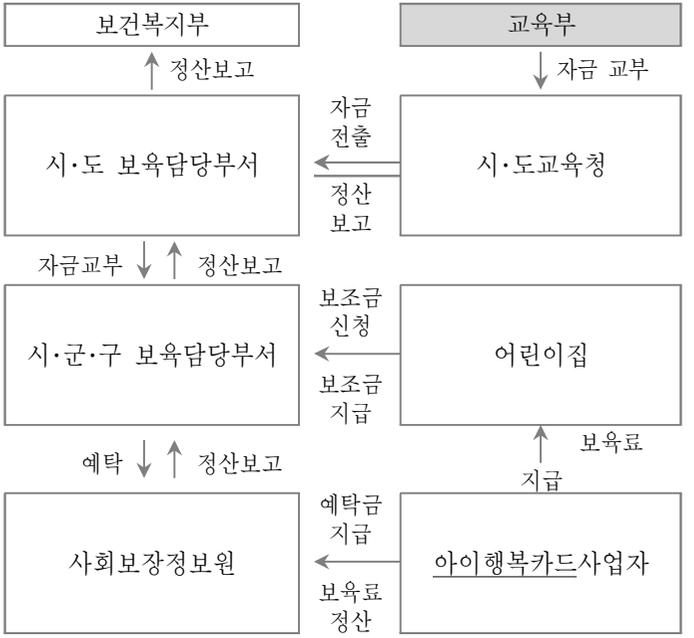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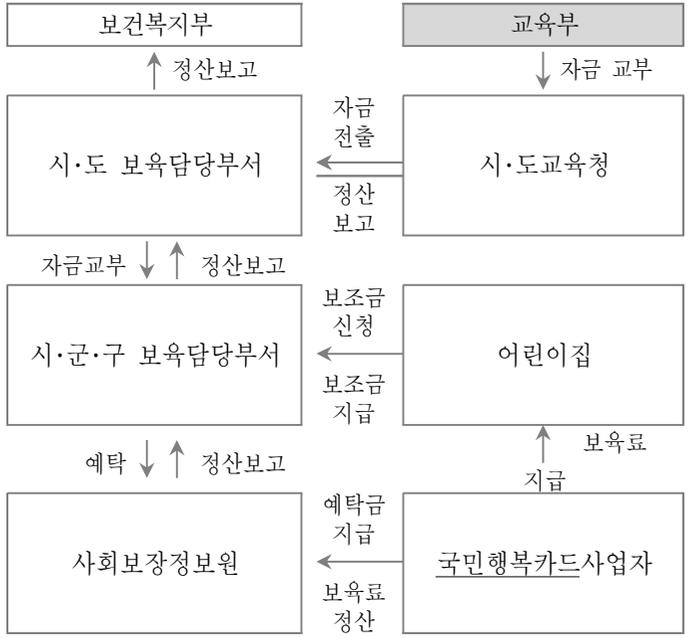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중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또는 중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2. 보육료 지원 개요	349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 대상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 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2. 보육료 지원 개요	350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15.9.19 시행) ○ (생략) - (근거) (생략) - (고지대상) (생략)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u>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u>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15.9.19 시행) ○ (생략) - (근거) (생략) - (고지대상) (생략)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u>영아수당(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u>	
3. 만0~5세 보육료	351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중략) * 취학유예: 만6세아('14. 1. 1~'14.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21.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8.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중략) * 조기입학: '22.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9.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18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만6세아('15. 1. 1~'15.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므로 ' 18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p> <p>※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p>	<p>-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p> <p>※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p>	
3. 만 0-5세 보육료	352	<p>가. 지원대상(만0세-5세)</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제외 대상</p> <p><지원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9. 1. 1. 이후 출생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u>(신설)</u> (생략)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p>가. 지원대상(만0세-5세)</p> <p><input type="checkbox"/> 지원제외 대상</p> <p><지원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0. 1. 1. 이후 출생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u>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u> (생략)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만0~5세 보육료	352	<p>【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0.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19. 01. 01. ~ '19. 12. 31.</td> </tr> <tr> <td>2세반</td> <td>'18. 01. 01. ~ '18. 12. 31.</td> </tr> <tr> <td>3세반</td> <td>'17. 01. 01. ~ '17. 12. 31.</td> </tr> <tr> <td>4세반</td> <td>'16. 01. 01. ~ '16.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5. 01. 01. ~ '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14. 12. 31.)</td> </tr> <tr> <td>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td> <td>'14. 01. 01. ~ '08. 12. 31.</td> </tr> </tbody> </table> <p>※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p>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0. 01. 01. 이후 출생	1세반	'19. 01. 01. ~ '19. 12. 31.	2세반	'18. 01. 01. ~ '18. 12. 31.	3세반	'17. 01. 01. ~ '17. 12. 31.	4세반	'16. 01. 01. ~ '16. 12. 31.	5세반	'15. 01. 01. ~ '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14.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4. 01. 01. ~ '08. 12. 31.	<p>【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 일 자</th> </tr> </thead> <tbody> <tr> <td>0세반</td> <td>'21. 01. 01. 이후 출생</td> </tr> <tr> <td>1세반</td> <td>'20. 01. 01. ~ '20. 12. 31.</td> </tr> <tr> <td>2세반</td> <td>'19. 01. 01. ~ '19. 12. 31.</td> </tr> <tr> <td>3세반</td> <td>'18. 01. 01. ~ '18. 12. 31.</td> </tr> <tr> <td>4세반</td> <td>'17. 01. 01. ~ '17. 12. 31.</td> </tr> <tr> <td>5세반</td> <td>'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td> </tr> <tr> <td>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td> <td>'15. 01. 01. ~ '09. 12. 31.</td> </tr> </tbody> </table> <p>※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p>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1.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 01. 01. ~ '20. 12. 31.	2세반	'19. 01. 01. ~ '19. 12. 31.	3세반	'18. 01. 01. ~ '18.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0. 01. 01. 이후 출생																																			
1세반	'19. 01. 01. ~ '19. 12. 31.																																			
2세반	'18. 01. 01. ~ '18. 12. 31.																																			
3세반	'17. 01. 01. ~ '17. 12. 31.																																			
4세반	'16. 01. 01. ~ '16. 12. 31.																																			
5세반	'15. 01. 01. ~ '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14.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4. 01. 01. ~ '08. 12. 31.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21.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0. 01. 01. ~ '20. 12. 31.																																			
2세반	'19. 01. 01. ~ '19. 12. 31.																																			
3세반	'18. 01. 01. ~ '18. 12. 31.																																			
4세반	'17. 01. 01. ~ '17. 12. 31.																																			
5세반	'16. 01. 01. ~ '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 1. 1.~'15.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 01. 01. ~ '09. 12. 31.																																			
3. 만0~5세 보육료	353	<p>나. 지원단가 (단위: 원)</p>	<p>나. 지원단가 (단위: 원)</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1.1.1~)	484,000	484,000	726,000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2.1.1~)	499,000	499,000	748,500	
					만1세반 ('21.1.1~)	426,000	426,000	639,000				만1세반 ('22.1.1~)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21.1.1~)	353,000	353,000	529,500				만2세반 ('22.1.1~)	364,000	364,000	546,000	
					만3~5세반 ('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1.3.1~)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p>※ 다만, II.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p> <p>※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p> <p>* (주의) '18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p>						<p>※ 다만, II.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p> <p>※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p> <p>*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p>								
4. 연장보육 필요사유	355	<p>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p> <p>※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2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참고</p>						<p>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p> <p>※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2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 안내」참고</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5. 연장보육료 지원	357~359	IX.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5. 연장보육료 지원 < 본문 내용 생략 >	IX.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5. 연장보육료 지원 < 본문 내용 > <p.404로 위치 이동>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5. 연장보육료 지원 < 본문 내용 >	
6. 장애아보육료	366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0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3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7. 다문화 보육료	367	- 취학대상(13. 1. 1.~12. 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취학대상(15. 1. 1.~12. 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함)	
8. 방과후 보육료	369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51,000원)(국비+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방과후 보육료	370	<p>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p>  <pre> graph TD MOHW[보건복지부] -- "정산보고 ↑" --- SC[시·도 보육담당부서] MOE[교육부] -- "자금 교부 ↓" --- SC SC -- "자금 전출" --- SC_C[시·도교육청] SC_C -- "정산 보고" --- SC SC_C -- "자금교부 ↓ ↑ 정산보고" --- SC_C_C[시·군·구 보육담당부서] SC_C_C -- "보조금 신청" --- SC_C_C_C[어린이집] SC_C_C_C -- "보조금 지급" --- SC_C_C_C SC_C_C_C -- "보육료 지급 ↑" --- SC_C_C_C_C[아이행복카드사업자] SC_C_C_C_C -- "예탁 ↓ ↑ 정산보고" --- SC_C_C_C_C_C[사회보장정보원] SC_C_C_C_C_C -- "예탁금 지급" --- SC_C_C_C_C_C SC_C_C_C_C_C -- "보육료 정산" --- SC_C_C_C_C_C </pre>	<p>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p>  <pre> graph TD MOHW[보건복지부] -- "정산보고 ↑" --- SC[시·도 보육담당부서] MOE[교육부] -- "자금 교부 ↓" --- SC SC -- "자금 전출" --- SC_C[시·도교육청] SC_C -- "정산 보고" --- SC SC_C -- "자금교부 ↓ ↑ 정산보고" --- SC_C_C[시·군·구 보육담당부서] SC_C_C -- "보조금 신청" --- SC_C_C_C[어린이집] SC_C_C_C -- "보조금 지급" --- SC_C_C_C SC_C_C_C -- "보육료 지급 ↑" --- SC_C_C_C_C[국민행복카드사업자] SC_C_C_C_C -- "예탁 ↓ ↑ 정산보고" --- SC_C_C_C_C_C[사회보장정보원] SC_C_C_C_C_C -- "예탁금 지급" --- SC_C_C_C_C_C SC_C_C_C_C_C -- "보육료 정산" --- SC_C_C_C_C_C </pre>	
8. 방과후 보육료	371	<p>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p> <p>1) 보육료 지원 체계</p> <p>⑨ 아이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 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p>	<p>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p> <p>1) 보육료 지원 체계</p> <p>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 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5	<p>가. 지원대상: <u>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u></p> <p>* (생략)</p> <p>* (신설)</p> <p>* (신설)</p>	<p>가. 지원대상: <u>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자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포함)·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삭제) 아동</u></p> <p>* (생략)</p> <p>*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u>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u></p> <p>* <u>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u></p> <p>○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p>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5	<p>다. 지원시점</p> <p>○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p> <p><u>① (신설)</u></p> <p><u>② (신설)</u></p> <p>-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p> <p>-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p> <p>* (신설)</p>	<p>라. 지원시점</p> <p>○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p> <p><u>①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u></p> <p><u>② 보육료⇔양육수당 자격변경시</u></p> <p>-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p> <p>-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p> <p>* <u>종일제아이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의 익월부터 자격 발생</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6	<p>라. 지원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p>* (신설) ※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영아중일제서비스에 한함)를 이용하는 경우 	<p>라. 지원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생략)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전후 기준으로 지급월 결정 <p>* 단, <u>종일제아이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u> ※ <u>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IV)</u></p> <p>-(삭제) -(삭제) -(삭제)</p>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78	<p>사. 출생아 소급지원</p> <p>1) <u>(신설)</u> ※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생략) - (생략) <p>① (생략)</p> <p>*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u>인지청구의 소 등</u></p>	<p>사. (삭제) 소급지원</p> <p>1) 출생아 소급지원</p> <p>※ <u>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영아수당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영아수당 사업안내 참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생략) - (생략) <p>① (생략)</p> <p>*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u>인지청구의 소 등(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div> <p>2) (신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 양육수당 신청 또는 가신청 시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함 </div> <p>2) 그 밖의 소급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보육료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이 다음의 경우로 인해 보육비용(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일체 수급하지 못했을 때 미지급 기간의 양육수당을 소급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같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2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80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생략) - (생략) ※ (생략) ※ 양육수당 → 장애인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인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동양육수당 지원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생략) - (생략) ※ (생략) ※ 양육수당 → 장애인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인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동양육수당 지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81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u>부록2.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u>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u>부록2. 2022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u>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82	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1) 환수 대상 2) 환수금액 산정 3) 환수금 징수 ① 징수 방법 ② <u>(신설)</u> ② 상계 처리 ③ 환수금 징수 절차	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1) 환수 대상 2) 환수금액 산정 3) 환수금 징수 ① 징수 방법 ② 환수 기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 - 다만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 ③ 상계 처리 ④ 환수금 징수 절차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공통사항	387	■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2021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인건비 지원 원칙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 <u>2022년</u>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89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설치·운영</u> 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90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 5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라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20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② 정원 21인이상, 현원 21인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농어촌 등 지역)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20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② 정원 21인 이상인 경우로 현원이 5인이상 20인 이하일 때,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정원</th> <th>현원</th> <th>지원 조건</th> <th>대도시 중소도시</th> <th>농어촌</th> </tr> </thead> <tbody> <tr> <td>20인 이하</td> <td>20인 이하</td> <td>보육교사 겸직시</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21인 이상</td> <td>4인 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5~20인</td> <td>평가인증이</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인 이하	20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	5~20인	평가인증이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인 이하	20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																			
	5~20인	평가인증이	×	○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data-bbox="1234 252 1921 416"> <tr> <td data-bbox="1361 252 1503 360">이하</td> <td data-bbox="1503 252 1677 360">유효하거나, 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td> <td data-bbox="1677 252 1796 360"></td> <td data-bbox="1796 252 1921 360"></td> </tr> <tr> <td data-bbox="1361 360 1503 416">21인 이상</td> <td data-bbox="1503 360 1677 416">-</td> <td data-bbox="1677 360 1796 416">○</td> <td data-bbox="1796 360 1921 416">○</td> </tr> </table> <p data-bbox="1234 416 1921 616">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 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p>	이하	유효하거나, 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21인 이상	-	○	○	
이하	유효하거나, 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											
21인 이상	-	○	○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91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평가결과 과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단서조항 추가)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평가결과 과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단, 신규개원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결과 B등급 이상 받았을 경우 평가결과 공표 당해연도에 한하여 최대 6개 월까지 조리사 인건비 소급 지급 가능)									
3. 장애아 보육 지원	394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 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장애아 1인당 기관보육료 587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693천원 지원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제)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 부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 장애아 1인당 기관보육료 622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월 지급액의 80% 또는 1,717천원 지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02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02천원)의 50%인 251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p>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32천원 지원 -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반별보육료(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32천원)의 50%인 266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398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 조건	생략	생략	생략	지원 조건	생략	생략	생략	
		지원 액	생략	생략	생략	지원 액	생략	생략	생략	
		수당 (월·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치료사 수당: 30만원 		수당 (월·인)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세이상 장애아대상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 (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 포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원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생략	생략	생략	현원 감소 시 지원 기준	생략	생략	생략	
		기타	생략	생략	생략	기타	생략	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장애아 보육 지원	400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69.3만원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div> <p>※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 (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p>	<p>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17천원 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정부지원시설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div> <p>※ 민간 지정 시설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 (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인건비 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만60세까지 지원)</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3. 장애아 보육 지원	402	<p>6) 기타 지원 사항</p> <p>○ 장애아 현원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교사 포함):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p>※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p> <p>※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p>	<p>6) 기타 지원 사항</p> <p>○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3세이상 장애아대상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p>○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p>※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p> <p>※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404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 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 수·구청 장	80%	502천원	- 인건비 지원(보건 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 수·구청 장	80%	532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 건복지부 장관 미승 인)	시장·군 수·구청 장	-	502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 건복지부 장관 미승 인)	시장·군 수·구청 장	-	532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 수·구청 장	80%(국공립·법 인) 169.3만원(민간)	502천원	- 인건비 지원	시장·군 수·구청 장	80%(국공립·법 인) 1,717천원(민간)	532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 부 지 원 시 설		80%	470천원	정 부 지 원 시 설		80%	499천원	
		- 1대 3기준(0세반)		80%	414천원	- 1대 3기준(0세반)		80%	439천원	
		- 1대 5기준(1세반)		80%	343천원	- 1대 5기준(1세반)		80%	364천원	
		- 1대 7기준(2세반)		30%	260천원	- 1대 7기준(2세반)		30%	280천원	
		- 1대 15기준(3세반)		30%	260천원	- 1대 15기준(3세반)		30%	280천원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 1대 20기준(4세반이 상)				
		민 간 보 육 시 설			470천원	민 간 보 육 시 설			499천원	
		- 1대 3기준(0세반)			414천원	- 1대 3기준(0세반)			439천원	
		- 1대 5기준(1세반)			343천원	- 1대 5기준(1세반)			364천원	
		- 1대 7기준(2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7기준(2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15기준(3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15기준(3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20기준(4세반 이상)				- 1대 20기준(4세반이 상)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5. 그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409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72,000원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u>1,492,608원</u> 지원	
5. 그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410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반 별 월 461.000원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반 별 월 467.454원 지원	
5. 그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414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72,000원(월) 지원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u>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492,608원(월) 지원</u>	
5. 그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417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4,300원 지원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u>55,000원</u> 지원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7. 기관보육료 지원	421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탄력편성 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관보육료(원)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탄력편성 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관보육료(원)	
		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528,000</u>	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570,000</u>	
		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528,000</u> <u>287,000</u>	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u>570,000</u> <u>310,000</u>	
		1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u>287,000</u>	1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u>310,000</u>	
		1, 2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u>287,000</u> <u>194,000</u>	1, 2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u>310,000</u> <u>210,000</u>	
		2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u>194,000</u>	2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u>210,000</u>	
		2, 3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u>194,000</u> <u>0</u>	2, 3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u>210,000</u> <u>0</u>	
		장애아반	1:3	3	<u>587,000</u>	장애아반	1:3	3	<u>622,000</u>	
		장애아 방과후반	1:3	3	<u>500,000</u>	장애아 방과후반	1:3	3	<u>530,000</u>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7. 기관보육료 지원	422	바.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불가 < 본문 내용 생략 >	바. 양육수당과의 중복지원 불가 < 본문 내용 >	
7. 기관보육료지 원	424	아. 지원중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p> <p>① ~ ③ (생략)</p> <p>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아닐 것</p> </div> <p>○ (생략)</p> <p>○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p> <p>-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관보육료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p> <p>※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및 폐원이 결정된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정지원시스템의 [지도점검관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일자를 매월말일 이전에 처분확정(입력)해야 기관보육료가 자동 산출되므로, 행정처분 일자 등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p> <p>예시) 4월 5~10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에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모두 지급하고, 5월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1~4일, 11~말일까지 지급</p>	아. 지원중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p> <p>① ~ ③ (생략)</p> <p>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아닐 것</p> </div> <p>○ (현행과 같음)</p> <p>○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p> <p>-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관보육료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p> <p>※ (운영정지) 운영정지일 전일까지 아동을 퇴소 처리하고 운영재개일에 아동을 입소 처리할 경우, 아동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기관보육료가 자동 산출됨</p> <p>(폐쇄) 폐쇄일 전일까지 아동을 퇴소 처리할 경우, 아동 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기관보육료가 자동 산출됨</p> <p>예시) 4월 5~10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에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모두 지급하고, 5월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1~4일, 11~말일까지 지급</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8. 차량운영비 지원	426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9. 교재·교구비지원	427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0년 12월말</u>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정원충족률이 85%이상인 어린이집은 제외 (단,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p>가. 대상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1년 12월말</u>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율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다가치보육 등)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관계없이 선정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9. 교재·교구비지원	427	<p>나.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u>현원규모</u>,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p>나.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우선지원 기준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지역 실정에 따라 대상시설 포함 지원기준 별도 마련 가능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28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중략>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18~20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신설>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중략>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u>최근 3년 이내</u>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u>최근 3년이내</u> :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6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중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u>최근3년이내</u> : 2018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중략>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u>신축, 국공립 전환</u> ,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u>최근 3년이내</u> :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39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개보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비,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u>최근3년이내</u> : 2018년 이후(포함) 지원시설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개보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비,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u>최근 3년이내</u> :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	455	<p>나.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말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 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 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p>나. 지원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말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② 치료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p>다.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p>*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p>다. 지원단가: 월 11만원(' 21년)</p>	<p>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p> <p>라. 지원단가: 월 11만원(' 22년)</p>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57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 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신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p>* 가족돌봄추가</p>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③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p>※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p> <p>3)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지원 제외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p>※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p> <p>3) 지원단가('21년)</p> <p>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p> <p>*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p>	<p>-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p> <p>*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p> </div> <p>-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p> <p>-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p> <p>-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p> <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p> <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p> <p>4) 지원단가('22년)</p> <p>○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원</p> <p>*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59	<p>1) 지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p>3) 지원단가: 월 7만 5천원(' 21년)</p> <p>4) 지급방식</p> <p>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p>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것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p> <p>※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p>	<p>1) 지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p>2)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p>3)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근로자의 날</p> <p>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p> <p>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p> <p>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p> <p>*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p> </div> <p>4) 지원단가: 월 7만 5천원(' 22년)</p> <p>5) 지급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신설)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 <u>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u>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0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1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신설)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생략) *****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2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 21년 1월 ~ ' 21년 12월 (지원단가) 월 2,271천원, ' 21년 1월부터 적용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 22년 1월 ~ ' 22년 12월 (지원단가) 월 2,303천원, ' 21년 1월부터 적용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04 247 577 288">구분</th> <th data-bbox="577 247 1202 288">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04 288 577 539">인건비</td> <td data-bbox="577 288 1202 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29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td> </tr> <tr> <td data-bbox="504 539 577 612">운영비</td> <td data-bbox="577 539 1202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29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220 247 1294 288">구분</th> <th data-bbox="1294 247 1928 288">세부 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20 288 1294 539">인건비</td> <td data-bbox="1294 288 1928 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55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td> </tr> <tr> <td data-bbox="1220 539 1294 612">운영비</td> <td data-bbox="1294 539 1928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u>대체교사</u>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55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u>대체교사</u>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29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1,855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u>대체교사</u>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464	<p>●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가.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u>야간연장보육교사</u>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p>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p>다.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월 83,140원(8시간 기준)</u>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p>●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가.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u>야간연장보육교사</u>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p>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p>다.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u>월 84,320원(8시간 기준)</u>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4	<p>바. 유의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라.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u>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u> </div>	<p>바. 유의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라.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u>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u> </div>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4	<p>○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마.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p><신설></p>	<p>○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p> <p>마.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u>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0일까지 지원</u>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5	<p>가. 지원 기준</p> <p>1) 지원 대상</p> <p>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p> <p><신설></p> <p>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p> <p>-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p> <p>*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p> <p>※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p>	<p>가. 지원 기준</p> <p>1) 지원 대상</p> <p>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p> <p>※<u>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u></p> <p>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p> <p>-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u>영유아반</u>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p> <p>*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p> <p>※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p>※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전체 정원충족률이 아닌 영아반 충족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p> <p>2) 지원 제외 대상</p> <p>○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p> <p>-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p> <p><신설></p>	<p>※ (삭제)</p> <p>2) 지원 제외 대상</p> <p>○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p> <p>-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p> <p>-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p>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6	<p>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지원단가) ' 21년 1월부터 적용</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11천원* 지원</p> <p>*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p>	<p>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지원단가) ' 22년 1월부터 적용</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25천원* 지원</p> <p>*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1인 25,360 원)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p>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7	<p>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p> <p>○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p> <p><신설></p>	<p>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p> <p>○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담임교사의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 등·하원 및 출결관리 ·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 ·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 학부모 상담 등 </div> <p>- 이때,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라. 사업기간: '21년 3월 ~ '22년 2월	수 있음 라. 사업기간: '22년 3월 ~ '23년 2월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7	<p>마. 지원 절차</p> <p>○ (지원 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p> <p>- '21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 21. 3.~ ' 22.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p> <p>-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p> <p>-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p>	<p>마. 지원 절차</p> <p>○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p> <p>- '22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 21. 3.~ ' 22.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p> <p>-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p> <p>- (삭제)</p>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8	<p>바. 유의사항</p> <p>-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시) '20.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 21. '22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p>	<p>바. 유의사항</p> <p>-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시) '22.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 23. '24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p>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70	<p>마. 지원 단가</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11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0천원 지원</p> <p>사. 사업기간</p> <p>○ 2021년 3월 ~ 2022년 2월</p>	<p>마. 지원 단가</p> <p>○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25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0천원 지원</p> <p>사. 사업기간</p> <p>○ 2022년 3월 ~ 2023년 2월</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70	아.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신설>	아.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71	자.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신설>	자.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예: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71	자. 유의사항 <신설>	자. 유의사항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차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18. 공공형어린이집	472	바. 2021년 운영 계획 ○ 기존 어린이집 및 신규선정 포함 2,280개소 내외 운영 예정	바. 2022년 운영 계획 ○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XI.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79	<p>바. 시설 설치기준</p> <p>○ 입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단, 설치비 국고보조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u>타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u> <p>(생략)</p>	<p>바. 시설 설치기준</p> <p>○ 입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함. 단, <u>설치비 국고보조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타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u> <p>(생략)</p>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80	<p>사. 직원 기준</p> <p>(생략)</p> <p>○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p>※ 국비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소 상근 직원수에 미달할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운영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p> <p>※ 보육돌봄사업(대체교사 인건비) 국고보조로 채용한 대체교사인력은 최소 상근 직원의 수에서 제외함</p> <p>※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팀(과)제로 운영할 수 있고, 팀장(과장) 직책을 둘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21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 업무 경력에 따름 <p>(생략)</p>	<p>사. 직원 기준</p> <p>(생략)</p> <p>○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p>※ 국비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소 상근 직원수에 미달할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운영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p> <p>※ 보육돌봄사업(대체교사 인건비) 국고보조로 채용한 대체교사인력은 최소 상근 직원의 수에서 제외함</p> <p>※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팀(과)제로 운영할 수 있고, 팀장(과장) 직책을 둘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22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 업무 경력에 따름 <p>(생략)</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6	<p>다. 업무위탁 (생략)</p> <p>○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이 경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p> <p>※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p> <p>(생략)</p>	<p>다. 업무위탁 (생략)</p> <p>○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이 경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p> <p>※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p> <p>(생략)</p>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7	<p>라. 지도감독 (생략)</p> <p>○ 또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지사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p> <p>※ 매년 초에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출</p>	<p>라. 지도감독 (생략)</p> <p>○ <u>매년 초에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u></p>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7	<p>마. 직원 임면관리 (생략)</p> <p>○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p>(생략)</p>	<p>마. 직원 임면관리 (생략)</p> <p>○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p> <p>(생략)</p>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90	<p>가.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기준</p> <p>○ 중앙센터 : 2,174백만원(전액 국비지원)</p> <p>○ 시도센터 : 평균 327백만원(국비(서울, 지방 50%): 지방(서울 80, 지방 50%))</p> <p>※ 사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p>	<p>가.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기준</p> <p>○ 중앙센터 : 2,242백만원(전액 국비지원)</p> <p>○ 시도센터 : 평균 327백만원(국비(서울, 지방 50%): 지방(서울 80, 지방 50%))</p> <p>※ <u>사도 및 사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u></p>	

제 목	쪽*	현 행	개 정	적용시점
	491	<p>라.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 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p>라.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 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94	<p>가. 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건축비 : 1,676/m² (생략) <p>다.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p>가. 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건축비 : 1,676/m² (생략) <p>다. 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95	<p><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지역 > (생략)</p> <p>·2021년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p>	<p><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지역 > (생략)</p> <p>·2021년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p> <p>·2022년 : 충남 당진,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p>	

참고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5,904,400	2,158,700	24,220,800	2,018,400	22,999,200	1,916,600
2	26,498,400	2,208,200	24,421,200	2,035,100	23,132,400	1,927,700
3	27,232,800	2,269,400	24,640,800	2,053,400	23,265,600	1,938,800
4	27,993,600	2,332,800	25,023,600	2,085,300	23,397,600	1,949,800
5	28,762,800	2,396,900	25,476,000	2,123,000	23,528,400	1,960,700
6	29,910,000	2,492,500	26,203,200	2,183,600	23,656,800	1,971,400
7	30,955,200	2,579,600	26,775,600	2,231,300	23,782,800	1,981,900
8	32,083,200	2,673,600	27,205,200	2,267,100	23,911,200	1,992,600
9	32,884,800	2,740,400	27,759,600	2,313,300	24,032,400	2,002,700
10	33,783,600	2,815,300	28,406,400	2,367,200	24,164,400	2,013,700
11	34,779,600	2,898,300	29,253,600	2,437,800	24,397,200	2,033,100
12	35,762,400	2,980,200	30,121,200	2,510,100	24,716,400	2,059,700
13	36,500,400	3,041,700	30,879,600	2,573,300	25,190,400	2,099,200
14	37,287,600	3,107,300	31,524,000	2,627,000	25,742,400	2,145,200
15	38,331,600	3,194,300	32,198,400	2,683,200	26,259,600	2,188,300
16	39,106,800	3,258,900	33,154,800	2,762,900	27,100,800	2,258,400
17	39,864,000	3,322,000	33,854,400	2,821,200	27,741,600	2,311,800
18	40,704,000	3,392,000	34,554,000	2,879,500	28,410,000	2,367,500
19	41,517,600	3,459,800	35,218,800	2,934,900	29,049,600	2,420,800
20	42,222,000	3,518,500	35,917,200	2,993,100	29,713,200	2,476,100
21	43,377,600	3,614,800	37,057,200	3,088,100	30,777,600	2,564,800
22	44,144,400	3,678,700	37,742,400	3,145,200	31,388,400	2,615,700
23	44,827,200	3,735,600	38,346,000	3,195,500	31,995,600	2,666,300
24	45,516,000	3,793,000	39,031,200	3,252,600	32,575,200	2,714,600
25	46,293,600	3,857,800	39,657,600	3,304,800	33,210,000	2,767,500
26	47,013,600	3,917,800	40,284,000	3,357,000	33,788,400	2,815,700
27	47,679,600	3,973,300	40,827,600	3,402,300	34,218,000	2,851,500
28	48,372,000	4,031,000	41,424,000	3,452,000	34,794,000	2,899,500
29	49,008,000	4,084,000	42,076,800	3,506,400	35,343,600	2,945,300
30	49,704,000	4,142,000	42,644,400	3,553,700	35,917,200	2,993,100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